

김규동 연구위원

요약

금융위원회는 연금보험 중도 해지자의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자의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예: 일본의 토탄형 연금보험), 연금보험의 중도환급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번 규제 개선 발표는 토탄형 연금보험 도입보다는, 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더 큰 의의가 있음. 보험회사는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모집인의 연금보험 판매 유인을 확대하고 연금보험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해지리스크와 민원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 규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음⁵⁾
 - “중도 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저해지형 구조),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자의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본의 토탄형 연금보험을 예로 들었음
 - 토탄형 연금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또는 계약 해지 시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 수령액을 증액하는 연금보험임
 - 일본에서는 2016년 일본생명이 토탄연금을 처음으로 개발·판매하였으며, 이후 제일생명, 간포생명, 태양생명 등이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였음
 - 연금보험은 연금 가입자가 충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저축성보험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는 충분한 연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았음
 -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은 저축에 보험의 보장을 결합한 형태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일정한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므로, 해지환급금보다 연금액을 우선시하여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번 금융위원회의 규제 개선 발표는 이를 반영한 것임
- 이번 연금보험 규제완화는 토탄형 연금보험 도입보다는,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국내에서 토탄형 연금보험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
 - 2011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일부 보험상품에 최적해지율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2016년에는 생존연금에도 최적해지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되었음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11. 21), “보험분야의 낮은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2016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금보험에서 1보험기간(연금 개시 전)에도 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료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음⁶⁾
-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보험모집인의 연금보험 판매에 대한 무관심과 민원리스크, 해지리스크 때문에, 토티형 연금보험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망이나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토티형 연금보험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모집인의 적극적인 상품 설명과 가입자의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연금보험의 낮은 모집수수료 때문에 보험모집인들은 복잡한 상품구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판매할 유인이 낮았음
 - 또한 토티형 연금보험은 저해지환급형 상품으로 해지율 예측 실패로 인한 해지차손 리스크가 큰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차 및 사업비차에서 수익이 확보되어야 함
-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 의지는 연금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의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은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연금보험 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임

-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상품설계 등)의 개정을 언급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강화된 환경에서 연금보험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⁷⁾
 - 현행 규제는 연금보험의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금리 환경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보험기간의 보장내용 및 사업비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엄격히 제한됨
 - 따라서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자율성은 강화되고 상품의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모집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보험모집인의 판매 동기가 강화될 것이며,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보험모집인들은 복잡한 상품구조를 적극적으로 설명한 후에 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 토티형 연금보험의 상품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대한 줄이면서 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망자 및 해지자의 재원으로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으므로 연금보험의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보험회사는 해지율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므로 상품 개발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당국도 새로운 형태의 연금보험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함

6) 보험업감독규정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납입보험료 이상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제3보험에서도 사망 시에는 납입보험료나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6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 제7-60조 제9호를 추가하여 연금보험의 제1보험기간에도 납입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보다 적게 연금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하였음
 보험업감독규정 제 7-60조(생명보험의 상품설계 등) 제9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함.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함

7) 보험업감독규정 제 7-60조(생명보험의 상품설계 등) 제3호
 저축성보험의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함.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은 평균공시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음

- 해지율을 너무 높게 적용하여 상품을 설계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차손을 입게 되므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해지율 적용이 필요함
 -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서는 저해지환급형 보장성보험에서 적용한 해지율(3~4%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저해지환급형 유니버설 생명보험의 해지율이 1.5% 미만으로 수렴한 사례가 있으므로, 연금보험의 해지율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 그러나 해지율을 너무 낮게 적용하면 해지에 따른 연금 증액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으므로, 토탈형 연금보험에서 해지율 예측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보험모집인이 토탈형 연금보험의 상품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더라도 민원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므로, 이미 토탈형 연금보험을 판매 중인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여 대비하여야 함
 - 일본의 토탈형 연금보험 판매와 관련한 민원 사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보험회사의 판매 경쟁이 발생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해지율을 너무 높게 적용하면 보험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감독할 필요가 있음